

5. 생활관 규정

제정 : 1996.03.01
개정 : 1997.01.01
개정 : 2004.07.01
개정 : 2006.03.01
개정 : 2007.09.01
개정 : 2009.07.01
개정 : 2012.06.18
개정 : 2016.02.01
개정 : 2020.02.13
개정 : 2022.01.25

제 1 장 총 칙

-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질서있는 공동생활로 인격 도야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활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명칭, 소재) 생활관의 명칭은 세한대학교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생활관의 소재는 본교 구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하나, 필요에 따라 교외에 둘수도 있다.
- 제 3조 (업무관장) 생활관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장이 관장한다.
- 제 4조 (개관기간)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학사일정에 따른 개강, 종강에 맞추어 입·퇴관일을 정하며 특수한 경우 생활관장의 판단 하에 연장, 단축 또는 휴관할 수 있다.(개정2022.01.25.)
- 제 5조 (이용제한) 생활관의 숙소 및 시설물의 이용은 관생에 한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관장은 관생이 아닌 자에게도 일정기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 6조 (관생활동) 관생의 활동은 학문정진 및 교양함양을 위한 활동은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허용한다.
- 제 7조 (관생수칙) 관생의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제 2 장 조 직

- 제 8조 (조직) ① 각 캠퍼스 생활관에 생활관장을 둔다. 생활관장은 본교의 전임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01.13., 2022.01.025)
- ② 생활관의 운영 및 관생의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
- ③ 생활관 행정 및 시설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정원은 총장이 정한다.
- ④ 삭제
- ⑤ 생활관 업무 보조를 위해 생활관생 중 자치위원회를 두되 그 선발 및 운영은 생활관장이 정한다.
- 제 9조 (생활관장 등의 직능) ① 생활관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관생의 생활교육을 지도한다.
- ② 지도교수는 생활관장을 보좌하며 관생을 지도하고 생활관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삭제
- ④ 생활관 직원은 생활관장을 보좌하며 다음사항을 관장한다.
1. 생활관생 선발 및 호실배정
 2. 생활관생 생활지도
 3. 생활관생 입퇴관

4. 생활관 시설물관리
 5. 기타 생활관 관련업무
- ⑤ 생활관 자치위원회는 생활관 직원을 보좌하며, 점호 및 시설물 관리, 지시사항 이행 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캠퍼스에 생활관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22.01.25.)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 및 학생대표를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생활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2. 위원은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또는 직원, 학생대표로 위촉한다.
 3. 간사는 생활관 직원으로 한다.
 4. 학생대표는 생활관 자치위원장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 또는 위촉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에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폐기
 2. 생활관비 책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삭제2022.01.25.)
 4.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4 장 입관 및 퇴관

- 제11조 (입관자격) 생활관에 입관할 수 있는 자는 본교재학생에 한한다.(단, 국내외 교류 등 필요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본교 재학생이 아닌자도 입관 할 수있다.)
- 제12조 (입관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관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유기정학 이상)을 받은 자
 2. 생활관에서 퇴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전염성 질환자 또는 보균자(활동성)
 4. 휴학중인 자
 5.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는 자
 6.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 제13조 (관생선발) ① 생활관에 입관하고자 하는 자는 관생선발 기간중에 입관원서를 생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생활관장은 관생 선발기준에 의거 입관원서를 심사한 후 본인에게 입관통지한다.
 - ③ 삭제

④ 관생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입생, 복학생(1학기)(신설2016.02.01.)
2. 목포권(당진권)이외의 거주자(개정2016.02.01.)
3. 외국인 재학생
4. 장애인 본인
5. 학업성적 우수자
6. 생활관 상별접수
7. 가계 형편 곤란 자
8. 생활관장 및 지도교수가 추천한 자

⑤ 관생 선발은 매 학기초에 실시한다.(단,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관후보 순위에 따라 추가 선발 할 수 있다)

⑥ 의무입주 대상학과는 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정한다.(신설2016.02.01.)(개정2020.01.13.)(개정 2022.01.25.)

제14조 (입관등록) 생활관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생활관비를 납부한 자로, 별도로 정한 입관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며, 입관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관하지 않은 학생은 입관을 취소한다.

제15조 (퇴관처분) 생활관장은 관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생활관장은 퇴관처분을 할 수 있다.

1. 관생수칙을 위반한 경우
2. 생활관비를 미납한 경우
3.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생활관 별점을 초과한 경우
5. 제적(자퇴포함)한 경우
6. 기타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6조 (퇴관승인) 관생은 해당학기 중에 퇴관 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퇴관을 희망할 경우에는 퇴관 신청서를 제출하고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입관허가기간) 입관허가 기간은 한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8조 (경비부담) 생활관의 시설비, 시설보수비 및 보조를 받은 경비 이외의 사생활에 필요한 경비는 관생이 부담한다.

제19조 (생활관비 책정) ① 생활관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를 총장이 정한다.

② 삭제

제20조 (생활관비 납부) ① 생활관비는 학기 단위로 납부한다.(단, 방학 중 생활관 이용에 따른 납부, 환불기준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개정2022.01.25.)

② 생활관비 납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생활관비 환불은 별표2와 같으며, 환불금액은 퇴관일을 기준으로 한다.(단, 방학 중 생활관 이용에 따른 환불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생활관비 납부기간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⑤ 생활관의 모든 이용자는 정해진 생활관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본조 제2항, 제3항과 관련하여 천재지변, 국가재난, 국가적 질병 감염증 등으로 인한 생활관 입관일, 퇴관일이 변경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학기 생활관비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 환불할 수 있다.

(신설2022.01.25.)

⑦ 학기 중 중도입관의 경우 별표1에 따르며, 중도입관 후 중도퇴관을 하는 경우 해당학기 관리비 총액에
서 별표2를 적용하여 환불한다.(신설2022.01.25)

제21조 (생활관비의 용도)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물 보수 등으로 충당한다.

제22조 (예산 및 결산) ① 삭제 (삭제2022.01.25.)

② 삭제 (삭제2022.01.25.)

제23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학교예산 및 회계규정에 따라 3월1일부터 익년도 2월말 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개정시행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시행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교명변경으로 대학명칭을 “대불대학교” 에서 “세한대학교” 로 변경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02월 01일부터 적용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1월 13일부터 적용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생활관비 징수 기준(입관일부터 퇴관일까지의 입주기간을 4분할하여 기준일에 맞게 징수)

구 분		기준일	입주기간 1/4이전	입주기간 2/4이전	입주기간 3/4이전	입주기간 3/4이후
		입 관	전 액	2/3	1/2	1/3
관리비		입 관	전 액	2/3	1/2	1/3
식 비		-. 입관일로부터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수납 한다.				
자치회비 및 보증금		-. 전액 징수한다.				

1) 10단위미만 절사

별표 2. 생활관비 환불 기준(입관일부터 퇴관일까지의 입주기간을 4분할하여 기준일에 맞게 징수)

구 분		기준일	입관일 이후 7일 이전	입주기간 1/4이전	입주기간 2/4이전	입주기간 3/4이전	입주기간 3/4이후
		퇴 관	80%	60%	40%	20%	0
관리비		퇴 관	80%	60%	40%	20%	0
식 비		-. 퇴관일 다음날로부터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환불한다. 단, 학기 최종 월에 퇴관할 경우엔 환불하지 않는다. -. 교육실습(2주 이상) 대상자에 한하여 사전에 신청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환불한다.					
보증금		-. 열쇠분실 개당 5,000원, 청소 불량호실 1인당 10,000원, 비품 손상실 전액					
자치회비		-. 환불하지 않는다.					

1) 퇴관일에 점검결과 비품 등이 손상되어 공동책임이 따르는 경우에는 호실 관생전원에게 공제한다.

1) 10단위미만 절사